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75

발의연월일: 2023. 5. 12.

발 의 자: 정경희・조경태・金炳旭

성일종 · 김상훈 · 박형수

김용판 · 조명희 · 서병수

박정하 • 권은희 • 한무경

이태규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, 학교폭력의 방식도 치밀·교묘해지고 있음.

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,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- 나.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 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,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 에 학급교체를 추가함(안 제17조제4항).
- 다. 가해학생이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4항).
- 라.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, 교육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,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며,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- 마.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2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)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에게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"보복행위"를 "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"를 "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제1항제2호의 조치와 동시에 제1항제1호,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. 가해 학생이 제1항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,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7조의3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3(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) ①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(이하 이 조에서 "행정심판등"이라 한다)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행정심판등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행정심판등의 청구사실, 진행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1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
 - 2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소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
 - ③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.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를

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3(학교의 장 등의 책임 면제)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학교의 장의 긴급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

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3(피해학생의 분리 요청
	권)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
	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
	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	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
	학생의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
	정할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
	거쳐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
	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
	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
	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
	<u>여야 한다.</u>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	
와 가해학생의 선도・교육을	
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	
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	
다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	

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기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
 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<u>보복</u>
 행위의 금지
- 3. ~ 9. (생 략)
- ②·③ (생 략)
-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수 있으며,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수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
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
<u>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</u>
 3. ~ 9. (현행과 같음)
5. 5. (한왕의 설급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(1)
제1항제2호
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제1항
제2호의 조치와 동시에 제1항
제1호,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
까지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.
가해 학생이 제1항제2호를 위
반하는 경우, 학교의 장은 제1
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
를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.

⑤ ~ ⑫ (생 략) <신 설> _____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3(피해학생의 진술권 보 장 등) ① 교육장은 제17조제1 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(이하 이 조에서 "행정심 판등"이라 한다)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게 행정심판등에 참가가 가능 하다는 사실과 함께 행정심판 등의 청구사실, 진행과정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 지하여야 한다.

②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 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

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 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

2.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 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「행정소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경우

③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제1 6조의3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.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3(학교의 장 등의 책임 면제)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 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

<신 설>

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.